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800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08,930원, 지방교육세 2,417,650원, 농어촌특별세 3,022,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가. 원고는 2016. 7. 8. [redacted] 구 [redacted]동 1-42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191.30㎡인 건축물(이하 '[redacted]'라 한다)을 신축 ·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redacted] 지하 1, 2층, 지상 2, 4, 5층 공연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6. 9. 6. 피고에게 아래 표 '납부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26,082,6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공연장을 대학로 문화지구 내 1종 권장시설(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2016. 9. 8. 아래 표 '감면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07,637,610원을 감면받았다.

(단위 : 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취득세	6,812,506,755	28/1,000	190,750,180	95,375,090	95,375,090
농어촌특별세	136,250,135	10/100	13,625,010	6,812,510	6,182,500
	95,375,090	20/100	19,075,010	0	19,075,010
지방교육세	54,500,054	20/100	10,900,010	5,450,010	5,450,000
합 계			234,350,210	107,637,610	126,082,600

다. 원고는 2016. 7. 27. [redacted] 지하 1, 2층 공연장(제1관,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및 융자 신청 공고를 하였고, [redacted]는 2016.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신청기간 : 2016. 11. 21.부터 2016. 11. 28.까지
○ 제1종 권장시설 지정신청 자격 : 민간 (소)공연장 중 등록공연장
○ 지정대상 : 당해 시설이 권장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함

라. 2016. 12. 7. 개최된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회의에서 [redacted]의 위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민간공연장 등록이 피고가 공고한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신청 기간 이후인 2016. 12. 2.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쟁점 부분은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 드림아트센터 지상 2, 4, 5층 공연장(제2, 3, 4관)은 2016. 12. 9.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쟁점 부분과 관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4. 이 사건 쟁점 부분과 관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42,308,930원, 지방교육세 2,417,650원, 농어촌특별세 3,022,060원, 합계 47,748,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5.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학로 문화지구 제1종 권장시설로의 사용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쟁점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못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지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단순한 행정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피고의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서 조세 감면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점,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으로서 권장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면 족하고 그 외에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하고, 실제로 위 쟁점 부분을 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제1종 권장시설 지정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부분에서 공연 중인 작품을 위하여 설치된 무대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여 민간공연장 등록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위 쟁점 부분이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그 직후 민간공연장으로 등록된 점, 피고가 1년 중 11월경에 1주일 정도만을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사건 쟁점 부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 지정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는 대학로 내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업종 및 문화시설 등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2004. 5. 20.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이화동·연건동·명륜동 일대 446,569㎡를 문화지구로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43호)하였다.

2) 원고는 2016. 7. 8.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 [redacted]를 신축·취득한 뒤 2016. 7. 27. [redacted]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본 임대차 물건을 민간공연장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 신청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redacted]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공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6. 11. 8.부터 2017. 1. 22.까지 [redacted]송'이라는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공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6. 9. 26. 주식회사 [redacted]씨어터와 [redacted] 2층 제2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 주식회사 [redacted]와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redacted] 5층 제4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본 임대차 물건이 민간공연장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redacted]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안전검사 실시를 요청하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안전진단 담당자가 2016. 11. 2.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작품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6) [redacted]는 2016. 11.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후 2016년도 권장시설 지정 신청기간 이후인 2016. 12. 2. 이 사건 쟁점 부분을 공연법 제9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기해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였고, 2017년도 권장시설 신청기간(2017. 10. 30. ~ 11. 10.)에 피고에게 위 쟁점 부분을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7. 11. 28.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4, 19, 22, 23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의 내용 및 체계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나)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는 '시·도지사 등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사행행위 등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가 문화지구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조 제1호에서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문화시설에는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1호는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이 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으로 작성하여 공고(2016. 8. 12. 종로구 공고 2016-765호)하였는데, 위 관리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개요

2. 계획내용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 권장시설 지원계획

○ 권장시설 지정, 조세감면, 융자지원, 권장시설 유치 지원 등

제5장 부문별 관리계획

1. 권장시설 지원계획

1) 권장시설 지정

(1) 목적

공연장 및 공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권장시설 지정

- 공연장 및 공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연 관련 업종 및 시설, 대학로 정체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업종 및 시설을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지원

(2) 현황

권장시설 지원계획의 실효성 문제 대두

- 지정 기한(5년) 만료 및 재지정 여부를 고려하면 현재 권장시설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설은 33개소

○ 현재 대학로에 200개 공연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권장시설로 지정된 공연장은 33개소에 불과. 권장시설 지원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대두

권장시설 지정 대상 및 관리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현재 권장시설 지원계획은 등록공연장 및 미등록공연장을 모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권장시설로 장려하기 어려운 공연장까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 내포

- 전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권장시설로 지정되는 공연장 역시 안전진단 등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등록공연장으로 제한할 필요성 대두

- 미등록공연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보다는 등록 유도 정책이 필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⑶ 관리계획

등록공연장을 중심으로 지정

- 민간 공연장 중 등록된 공연장을 1종, 전시시설은 2종, 기타 문화시설 등은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
- 권장시설의 종별 분류는 아래와 같음
 - ○ 제1종 권장시설: 민간(소)공연장 중 등록공연장
 - ○ 제2종 권장시설: 전시시설
 - ○ 제3종 권장시설: 기타 문화 시설, 예술 관련 학교 및 공연 관련 업무/단체시설

권장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의무 부여

- 기존 관리계획이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비판이 있어서 공연예술계의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일부 신설
 - ○ 제1종 권장시설: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공연장 간판 및 티켓 박스 개선, 공동마케팅 등

2) 조세감면

⑴ 목적

권장시설 업종의 보호 및 육성

- 건물주에게 권장시설로의 이용 및 임대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의 조세를 감면

⑵ 현황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구세로는 재산세, 시세로는 취득세, 재산세 과세특례 등에 대해 50% 경감

⑶ 관리계획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해 50% 경감

- 조세감면 대상은 권장시설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 권장시설 용도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
 - ○ 단, 당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지역협의회

⑵ 현황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재정비 필요

-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는 대학로 문화지구의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로 형성되어 있음.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지침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단체 대표 1인, 종로구 부구청장, 관할 지역구의원,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종로구 건축위원회 각 1인이 참여하도록 규정됨

⑶ 관리계획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재정비 및 운영

㉠ 구성

- 종로구 부구청장, 종로구 문화국장, 관할 지역구 의원(이상 당연직), 공연계 단체 대표(5인 이상), 지역단체대표(3인), 공연예술 관련 전문가(2인),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구성. 종로구 담당부서 팀장이 간사

㉡ 역할

-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및 용도규제 관련 심의·의결

제7장 관리계획 운영

1. 이 사건 관리계획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이 사건 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3.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설치가 권장되는 업종이나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1종 권장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연장 및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을 말한다.

제3조(권장시설 지정대상) ① 당해 문화지구의 권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시설이 본 지침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목에 속하는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권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시설물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에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 상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권장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권장시설로의 지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권장시설 지정 및 해지) ① 당해 시설이 권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권장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그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권장시설로 지정을 요청받은 구청은 이를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 당해 시설이 권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는 접수된 서식과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당해 시설을 권장시설로 지정할 것인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1년에 1회에 한해 실시한다.

제5조(권장시설 지원사항) ① 권장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1. "제1종 권장시설"의 경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운영 및 건물 신·개축에 따른 융자지원, 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공연장 간판 및 티켓박스 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제7조(감면대상 및 내용) ①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할 수 있다. 단, 당해 시설물은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어야 한다.

②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권장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최초 납세의 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할 수 있다. 단, 당해 시설물은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감면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대장상에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위해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련 규정 등의 내용 및 체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특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조례에 기해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로의 공연장 및 공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대학로의 정체성을 보전하려 하고 있는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 정한 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서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 ②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조례 제2조 제2호는 '권장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등 중에서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관리계획의 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운영지침의 내용이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한 것이라거나 위 조례 규정에 없는 조세감면 요건을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은 이 사건 관리계획에 따라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될 것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그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민간공연장 등록을 마치고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취득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7. 8. 드림아트센터를 신축·취득하였으나, 이를 공연장의 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도로 사용하기 위한 무대설비 및 좌석 공사 등은 2016. 10. 24.이 되어서야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임차한 에스하우는 2016. 11. 2.경 위 쟁점 부분을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작품의 공연을 위해 2016. 10. 31.경 설치한 무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쟁점 부분을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에스하우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본 임대차 물건을 민간공연장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 신청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관리계획이 2016. 8. 2. 변경 공고되기 전에는 등록공연장 및 미등록공연장을 모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권장시설로 지정되는 공연장을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등록공연장으로 제한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6. 8. 2. 변경된 관리계획에서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만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 반드시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의 드림아트센터 취득 및 에스하우와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은 모두 이 사건 관리계획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③ 에스하우가 2016. 1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2016. 12. 2. 위 쟁점 부분에 대하여 민간공연장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위 쟁점 부분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 지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④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계획에서는 위 권장시설 지정을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한 심사를 1년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11월경에 1주일 정도만 권장시설 지정 신청을 받고 있어 위 기간을 놓치게 되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도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2016년도 제1종 권장시설 신청 기간 내에 민간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하여 권장시설 지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 2016년도 제1종 권장시설 지정을 위한 2016. 12. 7.자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심의가 있기도 전에 제1종 권장시설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임대한 이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드림아트센터 2관 및 4관의 경우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관리계획이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만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2016. 8. 2. 이후에 체결되었고,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위 각 공연장이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각 공연장은 구동식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복층규모의 중극장인 이 사건 쟁점 부분과 달리 고정식 기계장치만 설치되어 있는 소극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공연장이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분의 권장시설 미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국가를 실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위 지역문화진흥법에 기한 재정적 지원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민간공연장으로 등록되고 그 용도로 계속 사용됨으로써, 그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권장시설 신청기간 이후에 민간공연장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권장시설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강동훈

판사 김주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7. 5. 18. 서울특별시 조례 제64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당해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당해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5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융자

4.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전통문화상품인증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끝.